[별지 제38호서식] <개정 2013.3.24> (앞쪽)

성능시험·검정 및 인정업무대행자지정신청서				처리기간 30일
신청인	① 명칭(상호)			
	② 성명(대표자)		③ 생년월일 (사업자등록번호)	
	④ 주소(사업장)			
⑤ 성능시험 및 검정을 대행하고자 하는 방지 설비의 종류				

「해양환경관리법」 제112조제3항 및 「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」 제62조제2항에 따라 해양오염방지설비 성능시험·검정 및 인정에 관한 업무대행자로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: (서명 또는 인)

해양수산부장관 귀하

	신청인(대표자) 제출서류	담당공무원 확인사항 (동의하지 아니 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)	수수료
구비서류	1. 정관(법인인 경우로 한정합니다) 1부 2. 대행업무를 담당할 인력·시설 및 장비 현황 1부 3.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명칭·소재지 1부 4. 대행업무의 수행을 위한 자체기준 1부 5. 수수료 기준 1부	법인등기부등본 1부	없음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「전자정부법」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신청인(대표자) : (서명 또는 인)

210㎜ × 297㎜[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]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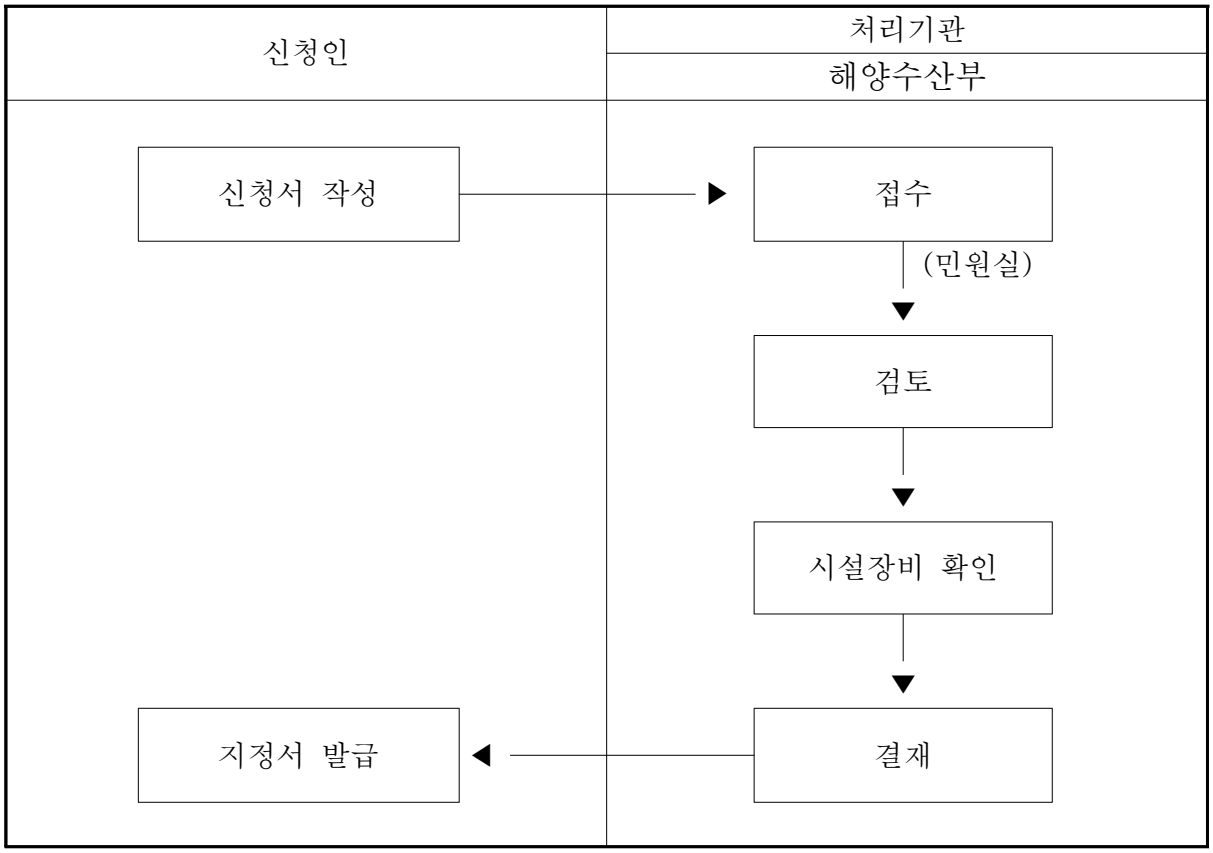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 (뒤쪽)